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아읍의 2개리 증설에 따른 리장정수 2명 증원(안 별표)

- 당초 : 고아읍 문성1리~문성9리 (리장 9)
- 변경 : 고아읍 문성1리~문성11리 (리장 11)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아읍 문성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성리	11	문성1리	문성1리 일원
		문성2리	문성2리 일원
		문성3리	문성3리 일원
		문성4리	문성4리 일원
		문성5리	문성5리 일원
		문성6리	문성6리 일원
		문성7리	문성7리 일원
		문성8리	문성8리 일원
		문성9리	문성9리 일원
		문성10리	문성10리 일원
		문성11리	문성11리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시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시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시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통리장 2명 증원으로 통리장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세출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통리장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9,360
통리장 수당	300,000원×2명×12개월	7,200
회의수당	40,000원×2명×12개월	960
상여금(100% 2회)	300,000원×2명×2회	1,200

4. 작성자

- 총무과 시정계 김재원(054-480-6767)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김 응 종
	담 당 자	김 재 원 (480-6767)